



미국 관세(상호관세 종료 및 신규 임시 Surcharge) 적용 변경 안내

2026년 2월 24일 발효

최근 미국 수입통관 관세 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표되어, 고객사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핵심 내용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1. 핵심 요약

(1)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IEEPA 근거)” 징수 중단

- 발효 시점: 2026년 2월 24일(화) 00:00 (미 동부시간, ET) 이후
- 적용 기준: 선적일/도착일이 아닌, 통관상 “소비용 반입(Entered for consumption)” 또는 “보세창고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시점 기준

(2) 단, ‘모든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기본관세(HTS 일반세율), 한미 FTA(KORUS) 적용 여부, 232/301, 반덤핑/상계 (AD/CVD) 등은 별개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규 “임시 Import Surcharge(Section 122)” 적용 가능성

- Section 122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2026년 2월 24일(화)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일부 품목에 10% 수준의 임시 surcharg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0일 동안만 임시 부과)
- 품목/예외 규정/실제 적용은 HTS 및 CBP 시스템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참고 사항

(1) 2/24 전후로 통관되는 화물(특히 도착이 임박한 선적 건)

- 동일 선적이라도, “통관(Entry) 접수/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번 변경은 화물의 선적일이나 도착일이 아닌, CBP에 소비용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 엔트리가 접수/수리(accepted)된 시점 또는 보세창고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미동부시각(ET)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에 2/24 전후 통관 예정 건은 A.I.F. 또는 지정 통관사를 통해 적용 관세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과거 상호관세 납부분(이미 통관된 건 포함)

- 과거 IEEPA 상호관세가 부과된 엔트리는, 건별로 정정(PSC) 또는 환급(Refund/Protest)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관련 “엔트리 상태(미결/청산), 기간, 제출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미국 원재료 20% 함유 시 관세 인하 (U.S. Content Credit)

- 기존 상호관세 체계에서는, US Content가 일정 기준(20% 이상) 충족 시 ‘미국 기원 가치 부분’에 대한 추가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고 방식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 ‘미국 원재료 20%’ 관련 규정은 작년 4월 도입된 상호관세 체계의 핵심 인센티브 중 하나로, 이번 새로운 체계에서도 ‘원산지 가치 기반 공제’ 원칙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큼니다.
- 조건: 수입품 가치의 20% 이상이 미국산 원재료나 부품, 또는 미국 내 공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친 경우.
- 혜택: 전체 수입 가액 중 ‘미국산 부가가치에 해당 비율만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예시: 100달러짜리 한국 완제품에 미국산 칩셋이 30달러(30%) 포함되어 있다면, 관세는 100달러가 아닌 70달러에 대해서만 부과
- 증빙: 이를 위해서는 수출자가 ‘미국산 원재료 확인서(U.S. Content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수입자는 통관 시 관련 코드 기재 필요.



3. 업무 체크리스트

① 2/24 전후 통관 예정건

- 품목별 HTS 확정
- KORUS FTA 적용 여부(원산지 증빙) 확인
- 232/301/AD-CVD 등 특별관세 해당 여부 점검
- Section 122 임시 surcharge 적용 여부 건별 확인

② 과거 IEEPA 상호관세 납부 관련 검토

- 대상 엔트리 리스트(Entry No./수입일자/품목/세액) 대상
- 엔트리 상태(미결/청산) 확인 후 정정/환급 가능성 개별 검토 필요

* 요약

구분	2026년 2월 23일까지	2026년 2월 24일부터 (발효)
IEEPA 상호관세	적용 중	종료 (징수 중단)
Section 122 Surcharge	해당 없음	신규 적용 가능 (약 10%)
적용 기준 시점	-	소비용 반입(Entry) 승인 시점
과거 납부분	-	환급/정정 검토 필요 (PSC/Protest)

4. 유의사항

본 안내는 고객사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적용은 CBP의 최종 지침, HTS 분류, 원산지 판정, 엔트리 시점 및 시스템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통관/관세 적용 확인 요청 시: (1) B/L 또는 AWB, (2) Invoice & Packing List, (3) 제품 스펙, (4) 예상 통관일자(ETA)를 함께 보내주시면 가장 신속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A.I.F. USA는 케이스별로 적용 관세 등 현지 상황 적시 안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